

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즉시
신고인	업체명		
	물자의 소유자(점유자) 또는 업체의 대표자 성명	생년월일	
	주 소		
	통지서 번호	물자 품명	
	물자 소재지	규격 또는 구조	
	단위	수량	
제출불능 사유			

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7조제1항에 따라 훈련대상물자를 제출할 수 없음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물적자원훈련통지서 교부권자 귀하

첨부서류	1.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: 파산결정서 사본 1통 2.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: 물자를 제출할 수 없거나 문서를 지참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또는 경위서 1통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

< 절 취 선 >

제 호

물적자원 제출불능 신고서 접수증

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7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하신 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,

- 그 사유가 타당하여 접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().
-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려하오니 이번 훈련에 훈련대상물자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().

년 월 일

(물적자원훈련통지서 교부권자)

(서명 또는 인)